

2009년도 경기도올림픽연수원 콘텐츠 개발 사업

- 경기교육정책 과정 원고 -

◆ 차시 정보

과정명	경기교육정책
영역 분류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운영
차시번호 및 차시명	4. 학생인권과 교권과의 관계

◆ 집필자 정보9

이름	배경내
소속	인권교육센터 '들'
직위	상임활동가
연락처	02-365-5412

◆ 변경 정보

순서	작성일	작성 내역	비고
1	2009. 12. 13.	초안	
2	2009. 12. .	내용 수정	

들어가기(생각열기)

이번 차시에서는 학생인권과 교권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생활을 하시면서 고단한 일들이 참 많으시지요? 교사로서 학교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권이 침해된다고 느꼈던 상황들을 떠올려봅시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일을 계기로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까? 교권을 침해하는 주체별로 일어나는 상황들을 분류해봅시다.

관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사건의 계기
교육청 vs. 교사				
관리자 vs. 교사				
교사 vs. 교사				
학부모 vs. 교사				
학생 vs. 교사				

☞ 화면에 이 표가 나올 수 있기는 한 거지요?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니, 부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시험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폭행했다는 소식이 실려있었습니다. 또 그 얼마 전에는 학생이 여교사를 희롱하는 말을 건네는 동영상이 유포돼 많은 우려를 자아냈었습니다.

한 교사단체가 2009년 9월 발표한 교권상담 자료를 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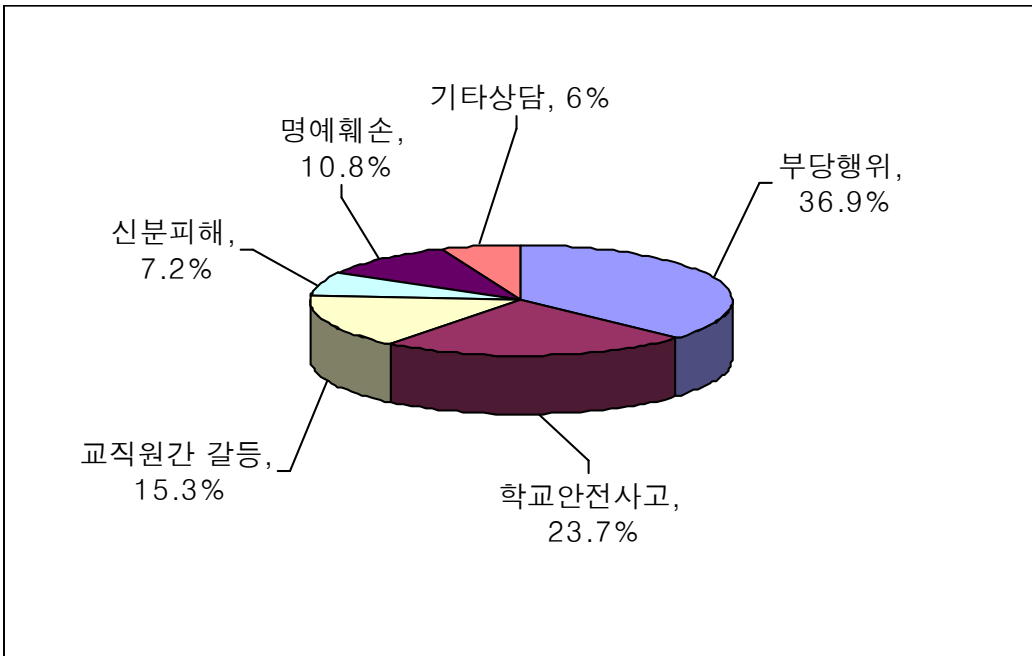
“육아휴직 중 둘째를 예정보다 일찍 출산해 휴직 연장을 신청했더니 교장선생님이 불쾌하게 전화를 받은 뒤 출산증명서를 갖고 직접 학교에 오라고 지시했다. 삼칠일도 되지 않아 학교에 갔는데 교감선생님이 회의 중이라며 2시간을 넘게 기다리게 했다.”

“저희 반 남학생 두 명이 3개월 동안 욕설을 하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갖고 험담을 퍼뜨린다.”

“반 아이가 방과후 활동 중 2층 화장실 난간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매일 병문안을 가서 학생의 건강도 확인했다. 그런데 오늘 학부형이 합의금을 요구하더라.”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떤 사례들을 떠올리셨습니까?

2008년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상담 통계를 보면 학부모 등에 의한 폭행·협박 등 부당행위가 1위를, 교직원 사이의 갈등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교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들어가기(함께 생각해볼 문제)

[학습주제]

1. 교권의 구체적 내용
2.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
3. 학생인권과 교권의 동시 존중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이번 차시에서는 우리가 흔히 ‘교권’이라고 말하는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다음, 교권과 학생인권이 흔히 충돌한다고 생각되는 사례들을 통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지를 따져봅니다. 이어서 학생인권과 교권이 동시 존중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알아보기

1. 교권의 구체적 내용

교권이 침해됐다고 이야기할 때 흔히 교사의 권위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권위와 권리는 다른 말입니다. 교사의 권위는 그 사람의 전문성과 헌신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것인 만큼, 상대방에게 교사의 권위를 존중할 법적 ‘의무’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권리’라는 것은 권리의 내용과 권리의 주체, 그리고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대상이라는 세 요소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권은 교사의 권위가 아니라 ‘교사의 권리’로서의 교권입니다.

정당한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교권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교사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 △교사라는 신분을 보장받고 존엄하게 일할 권리, 그리고 △교육할 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교사들도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교사라는 신분과는 없이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공간 안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연애의 목적>을 보면 교사들 사이의 연애 관계가 학교에 널리 알려지고 공개적으로 조롱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교사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담당 교사가 동료 교사들의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킨다거나 한 교사가 가진 종교나 생각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이 가해졌다면, 이는 어떠한 개인이든 누려야 할 인권이 침해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이 권리들은 학교공간 안에서든 전면 보장되어야 하며, 설령 제한되더라도 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교사라는 신분을 유지·보장받고 존엄하게 일할 권리입니다. 신분상의 권리에는 부당한 신분 박탈이나 보직 변경을 당하지 않을 권리, 교원단체와 노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권리, 정당하고 존엄한 대가를 받으면서 일할 권리, 정치적 자유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사립고등학교에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같은 재단 소속의 중학교로 교사를 내려 보낸다거나,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했다는 이유로 특정 보직에서 지속적으로 제외시킨다든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신분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 신분을 보장받고 존엄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는 일반적 인권과는 구분되지만, ‘노동자의 권리’로서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에 따라 기본권으로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이 또한 교사의 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행위와 관련된 ‘가르칠 권리’(수업권, The Right to Teaching)가 있습니다. 가르칠 권리는 교사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고 교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장되는 힘입니다. 가르칠 권리는 이른바 교육의 자유와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권으로 구성됩니다. 교육의 자유라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감시로부터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결정·편성하고 교재를 선택하며 교육내용과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나 교육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는 수업 참고자료조차 교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예정된 수업시간이 갑작스레 동의도 없이 학교나 교육청 행사 참여 시간으로 강제된다든지 한다면, 이는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 교권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권리는 기본적 인권으로서, 다른 교육구성원의 인권과 다름없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반면 세 번째 권리는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권리인 만큼, 교사라는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보장됩니다. 따라서 이때의 교권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인권보다는 하위에 위치하는 직무상의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도 교사의 수업권(교육할 권리)은 ‘교사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직권’(직무상의 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직무상의 권리는 관련된 상대방, 특히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제한성을 갖게 됩니다. 경찰이 그 지위로부터 비롯되는 체포권, 수사권 등을 행사하더라도 무고한

사람을 잡아들이거나 고문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신체의 자유를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만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무상의 권리라고 해서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전제되지 않은 한 함부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회 안에서 권리를 잘못 행사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도 자기의 인권이나 직무상의 권리를 잘못 행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과도하게 혹은 부당한 방식으로 행사할 때, 그것은 권리의 남용이 됩니다. 또한 교사임을 내세워 권위에 대한 일방적 존경을 요구할 때 그것은 상대방에게 모욕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로 비칩니다. 이런 상황들을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옹호하는 일들이 간혹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되풀이되다 보면 교권은 교사의 부당한 권력 또는 권력 남용과 동의어로 인식되기에 이릅니다. 일부 학부모나 학생들이 교권이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을 내비치는 데에는 ‘교권=교사의 일방적 권력’이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2.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

그렇다면 학생인권과 교권은 어떤 상관관계에 놓여 있을까요? 앞서 교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떠올려보았을 때, 어떤 관계에서 주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았습니까? 대개 인권문제는 상하 권력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늘 약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따져보면 일반적으로 여성이 사회적 약자 위치에 자리잡고 있지만, 그 여성은 다시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상대적 강자의 위치일 수 있습니다. 흔히 노가다라고 불리는 건설 일용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이지만, 그 노동자는 일자리를 구해 이주해온 이주노동자에 비해서는 상대적 강자의 위치일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로 흔히 얘기되는 노인 중에서도 재산이 많은 노인은 오히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인권문제를 둘러싼 관계는 다층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 사회만 보더라도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은 평교사에 비해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 교장 선생님이 나이 많은 남성 평교사를 대하기는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성이라는 지위가 교장이라는 지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권과 학생인권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인권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존엄하게 대우받고 육체적·정서적·문화적으로 감당할 만큼 교육받을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교육을 부과하는 것, 학교규율이 학생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은 학습권(The Right to Learning)을 포함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겠지요. 교권과 학생인권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보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제3자에 의해 동시에 침해당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책상 위에 엎드려 쪽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봅시다. 우리 학생들의 고단함이 짐작되지 않아요. 이 장면이 학교에서 강제된 0교시 아침학습이나 야간 학습 시간이라고 가정해보면 어떠신가요?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학생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교사의 인권도 동시에 침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늦은 밤 시간의 교육은 교사의 연장 근무 없이는 실현되기 힘듭니다. 0교시, 야간학습이 강요되는 학교에서는 교사에게도

학생 감독을 이유로 이른 출근, 늦은 퇴근을 요구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학생인권이 존중될 때, 교사 인권도 더불어 존중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최룡당하는 여교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캡처사건

얼마 전 많은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던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 사건의 한 장면입니다. 남학생이 젊은 여교사에게 “누나 사귀자”는 식으로 농을 건네고 있습니다. 여교사가 제지해도 남학생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자 많은 분들이 ‘교권 실추’를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이 남교사에게 이런 방식의 농을 건네는 일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반대의 경우를 상상하기 힘들다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이 ‘학생-교사’ 관계가 아니라 ‘남성-여성’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 사건을 교권 문제로 접근했을 때, 성희롱 피해를 당한 이 여교사는 학생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무능 교사’라는 낙인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여성인권 문제로 다루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 교사에게 ‘도전’하는 학생의 모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 중에는 알잡아볼 만한 교사에게 도전함으로써 자기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학생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은 주로 신규 여교사가 되곤 합니다. 왜일까요? ‘신규’(the Beginner)라는 약자적 지위, ‘여성’이라는 약자적 지위를 꺾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들의 밑바닥에는 교사-학생이 아닌 다른 권력관계가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난 2009년 6월에는 대구에서 지자체 행사에 학생 1만 5천명을 강제로 동원해 말썽을 빚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자체의 태도는 교육과정을 변칙적으로 운영하거나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에 참석시키는 일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해당 교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잦습니다. 이때 교사의 ‘가르칠 권리’(수업권)도 동시에 침해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교사가 자체 판단하여 행사 참여를 결정했다면 사정은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이때 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변경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교사의 수업권을 남용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의 수업권이 보장되는 이유는 교실 바깥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이 교사는 물론 학생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자유롭게 학습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때 교육이라는 배에

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배가 풍랑과 해적의 노략질로부터 자유로워야 그 배에 타고 있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가르치고 배우는 이중주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사에게 특별히 보장되어 있는 ‘불체포특권’ 역시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교사에게는 일반 노동자에게는 보장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보장되고 있는데요, 현행법이 아닌 한 소속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교 안에서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교사 신분과 직무수행의 임의적 박탈을 예방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마련된 권리입니다. 이처럼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대립적이라기보다는 외려 상호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학생인권과 교권의 동시 존중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듯 보이는 장면들은 대개 학생 지도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학생 지도권은 교사의 직무상 권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지도권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 지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 권리는 ‘학교규율은 학생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학교의 운영자·교사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상 의무에 충실한 상태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사의 학생지도가 정당한 목표와 방법에서 벗어난다면, 이는 정당한 교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한 경우가 아니라, 교권이 잘못 행사된 경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반면 정당한 학생 지도 과정에서도 문제 상황은 터질 수 있습니다. 목표도 방법도 정당했지만, 학생이 보인 반응이 교사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럴 때 교사로서 자괴감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때 교권의 반대편에 학생인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학생은 인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외려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 상처들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출산의 고통으로 몸을 뒤틀다 의사를 할퀴거나 가족의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여성의 행동을 보고 인권침해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때는 교권을 내세워 학생을 제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뿌리에 해당하는 조건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물론 교사에게 상처주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부러 심기를 건드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아마도 교사가 상처를 받으면 아파하는 ‘사람’으로 보이기보다 ‘강자’나 ‘권력자’로 보이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이 경우에도 교권을 앞세우기보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고 교사 역시 상처받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결국 학생인권은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만 내맡겨둘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생활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받는 교사들의 부담과 상처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인권을 보장하자는 것은 교사를 문제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에게 인권이 존중되는 경험을 제공함과 아울러 교사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학교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인권의 기준이 명확해져야 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학생인권조례를 자치법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등교시간, 서울의 한 사립 중학교 앞에서 이 학교 교사들이 요강을 들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똥 쌀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 이분들의 요구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 수에 비해 화장실 개수가 터무니없이 모자라 학생들이 온갖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오거나 수업시간 중에 화장실에 달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선생님들의 수업에도 많은 방해가 되었겠지요. 여러 번 재단측에 건의해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자 교사들이 요강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늦는 학생을 야단치거나 수업시간 중 화장실에 가는 학생들을 붙잡아 놓는 것이 학생들의 고통을 배가하는 일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잡는 일이 아니라 학교의 시스템을 고치는 일을 택한 것입니다. 물론 사립학교다 보니 교사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하셔야 했습니다. 만약 교사들의 신분이 좀더 안정돼 있었다면 더 일찍 문제가 해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학교가 준수해야 할 교육환경 기준이, 학생인권기준이 명확히 제시되고 강제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애초 요강을 들고 교문 앞에 서야 할 이유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학생인권과 교권은 같은 길을 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주최로 인도 다카르(Dakar)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인권에 기반한 학교 시스템을 갖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자이다. (...)어떤 교육 개혁도 교사의 능동적인 참여와 주인됨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모든 단계의 교육체계에서 교사는 존중받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각 나누기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여전히 마음에는 거부감이 일 수 있습니다. 학생을 교사와 동등한 인격체로 보기보다 아랫사람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인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학생을 인격체로, 인권의 주체로 대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완전무결한 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미성숙한 지점이 존재하고, 성숙의 완성은 생의 마감하는 순간까지 오지 않을지도 모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절의 학생지도 방식이 나름의

미도 있고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의미도 효과도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학생과의 관계, 새로운 학생 지도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4P'라고 불리는 4개의 일반 원칙에 기초해 있습니다. Protection(보호), Prevention(예방), Provision(제공), 그리고 Participation(참여)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장에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권으로서의 교육권이 보장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4개의 A가 충족되는 것을 말합니다. △학습자가 이용할 만한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개방되어 있어야 하고(Availability) △교육기회에 물리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차별없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Accessibility) △학생의 최상의 이익과 변화하는 사회조건에 따라 교육이 융통성있게 조율될 수 있어야 하며(Adaptability),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의 양과 질, 학교의 분위기가 학습자가 육체적, 정서적, 문화적으로 감당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Acceptability)는 것입니다. 이것만을 보더라도 학생인권은 학생 교육권 보장의 필수요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은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는 영역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책임감을 길러줄 수 있는 방안,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수업에 대한 흥미와 몰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안,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학생의 폭력적 행동을 제지하고 폭력의 원인을 뿌리뽑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그 방안을 찾으려면 먼저 교권을 다시 정립하고 학생지도의 목표와 방식도 재정립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리하기

이번 차시에서는 교권의 의미를 먼저 정리해 봤습니다. 교사의 권위가 아니라 권리로서의 교권은 교사의 인권과 직무상의 권리로 크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교사의 인권은 학생인권과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직무상의 권리는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또한 '존엄하게 대우받고 감당할 만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생인권이라고 할 때,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대립하기보다 상호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짚어보았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대립하는 듯 보이는 장면도 사실은 교권이 잘못 행사되었거나 학생이 공격적 반응을 내비친 사례임도 따져보았습니다. 결국 학생인권과 교권이 더욱 상호의존적으로 굴러갈 수 있기 위해서도 인권친화적 시스템을 갖춘 학교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필요가 있음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교사의 권한도 함께 높여가는 변화입니다.